

설명회 제03-2호

**주요 외감법 위반 사례
[독립성 및 사업보고서 관련]**

2025. 7. 10.



감사인감리국

I 독립성 위반

가 독립성 관련 개요 및 감사인 유의사항

□ **(개요)** 감사인은 감사대상 회사와의 이해상충을 배제하고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의 근간이자 필수요소인 독립성을 충실히 유지해야 함

□ **(유의사항)** 독립성 관련 준수사항*을 숙지하고 독립성 점검체계를 갖춰 감사계약 前 및 계약기간 중 독립성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야 함

* 외감법, 공인회계사법,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등

○ **(독립성 검토 철저)** 감사수임 前 제공한 비감사용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 훼손 위협*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

* 예 : 감사계약전 회계기록 또는 재무제표 작성 지원 용역을 수행후 감사인이 되는 경우 자기검토 위협(Self-review threats) 등 독립성 훼손 위협이 발생

- 비감사업무를 완전성 있게 점검하여 독립성 유지 대상의 범위를 구성원들이 인지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

○ **(독립성 훼손방지 안전장치 마련)** 법규상 금지업무가 아니더라도 감사대상 회사의 감사(감사위원회)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* 적절한 안전장치 마련 후 수행

* 금지업무 외의 비감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회사의 감사(감사위원회)와 협의하고, 이해상충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(감사위원회)의 동의를 필요(공인회계사법 시행령 §14④)

○ **(독립성 점검 체계 구축·운영)** 소속 사원 등과 감사대상 회사간 이해관계*, 동일이사 교체의무 등 관련 독립성 점검·유지를 위해 관련 정보 수집에 적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해야함

* 사원 또는 배우자의 감사대상 회사 주식 보유, 고용 관계, 채권·채무 등

나

독립성 위반 관련 사례

1 피감사인에게 금지된 비감사용역 수행 후 외부감사 수행

- 회계법인이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감사용역을 피감사회사가 아닌 회사에게 제공한 직후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입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

(사례) 회계기준서 도입용역 수행법인이 해당 회사와 감사계약 체결

- ◆ A회계법인은 B회사의 신기준서(x3년 시행) 도입을 위한 자문용역을 수행(x0년 3월~x2년 11월)하고 B회사와 신기준서 도입 첫해*(x3년) 재무제표 대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

* 회사의 신기준서 적용후 재무제표에 대한 법정감사는 'x3년이 최초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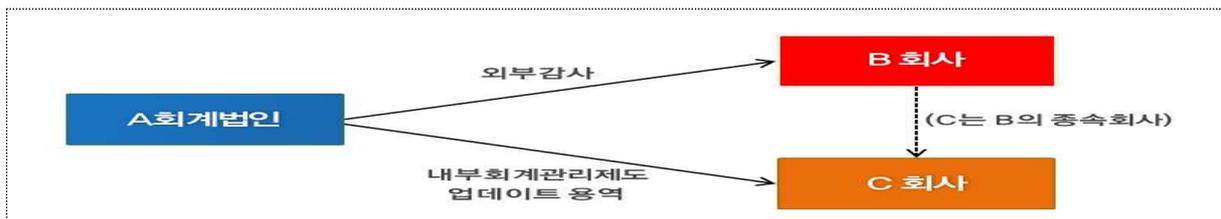
- ⇒ 감사업무기간동안 제공이 금지된 비인증업무(신기준서 도입용역)를 감사업무 착수 이전에 제공하고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기검토위협으로 인해 독립성 훼손 위험 발생

2 종속회사에 대한 컨설팅 등 비감사용역 제공

- 회계법인이 특정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 해당 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비감사용역을 수행한 경우

(사례) 종속회사 비감사용역 수행 중 모회사 외부감사계약 체결

- ◆ A회계법인은 x1년 3월부터 B회사의 종속회사인 C회사의 재무관리 기준 구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데이트 용역을 수행하던 중, 동년 6월 모회사인 B와 당해연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



- ⇒ 독립성 적용대상 회사 범위는 연결대상 지배·종속관계를 포함하므로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

3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

- 동일한 이사가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(상장사·대형비상장사 등은 4개 사업연도)에 대한 감사업무*를 수행한 경우

*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유착방지 등을 위하여 동일이사로 하여금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(상장사·대형비상장사는 3개사업연도)까지만 특정회사의 감사업무 수행을 허용

(사례) 대형비상장사 동일이사 교체 의무 위반

- ◆ A회계법인은 대형비상장사(12월말 결산법인)의 '19년 ~ '22년 4개 사업 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동일한 이사인 甲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함

다만, 최초 감사계약('19년 2월) 당시 회사는 중소기업비상장사였으나, '20 사업연도부터 대형비상장사에 해당('19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)

A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으나, 품질관리실 담당자가 동일이사 교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점검을 소홀히 함

- ◆ B회계법인은 대형비상장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동일한 이사인 乙에게 수행하게 함

B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있었으나, 중요 데이터의 수정이 담당자 1인의 판단만으로 이루어졌으며, 품질관리실 담당자가 동일이사 교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

- ⇒ 회사가 현재 시점에 대형비상장사에 해당하면 과거 대형비상장사가 아니었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연속감사는 3개 사업연도말까지 가능하여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

관련 모니터링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4 기타 독립성 점검체계 구축·운영 관련 미흡 사례

□ 회계법인의 독립성 점검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이 미흡한 경우

(사례1) 주식 보유현황 점검 관련 내부통제 미흡

- ◆ A회계법인은 구성원의 주식보유 여부를 종목별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* ERP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독립성 확인 내부통제가 미흡

* 전체 데이터를 다운받아 검색하는 것만 가능

업무담당이사는 시스템 조회없이 B사에 대한 감사계약 승인을 요청하였고, 품질관리실은 계약승인 심사시 ERP시스템의 조회방법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성원의 주식보유* 여부 확인없이 승인

* A회계법인 소속 사원의 배우자가 B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B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B사와 감사계약 체결

⇒ 구성원(배우자 포함)의 주식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, 계약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독립성 확인 누락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할 필요

(사례2) 주식 보유현황 점검 소홀

- ◆ C회계법인은 회계법인 구성원의 주식 보유현황 점검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주식 보유현황 자진신고 및 표본점검을 실시하였으나, 관리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퇴직자, 파견자, 휴직자를 점검대상 모집단에서 제외
- ◆ D회계법인은 구성원의 주식 보유현황 점검시 주식 거래가 없다고 신고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실제 증빙 등을 통한 점검을 미 실시
- ◆ E회계법인 이사는 독립성 관련 내부교육에 참여하지 않고, 자신의 사원 승진 사실과 배우자도 감사대상회사 주식 취득이 금지된다는 것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음
- ◆ F회계법인은 G회사와 '23년 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 후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전기('22년) 감사보수 채권이 주식(45주, 225천원)으로 출자전환되어 감사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'23년 사업연도 감사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음

⇒ 주식거래 점검시 독립성 준수 의무자가 모집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, 신고 내용의 정확성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

주식의 장내 매입이 아닌 취득(출자전환,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주식 '인출')도 있을 수 있으므로 '보유'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함

(사례3) 채권보유현황 점검 소홀

- ◆ H회계법인은 매분기마다 독립성의무 준수 확인서 징구, 감사계약 체결 전, 감사업무 기간 중의 독립성 확인 등 관련 내부통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ERP 상 소 임직원의 채권·채무 내역 입력 여부를 관리·감독하지 않아 소속 회계사의 감사대상 회사와의 재무적 이해관계에 대한 확인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하였음

⇒ 채권·채무관계 점검시 내역의 입력여부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

(사례4) 비감사업무에 대한 독립성 검토 미흡

- ◆ I회계법인은 재무제표 작성 지원,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등 자기검토 위험이 높은 업무 수행 후 직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 수임시 독립성 관련 검토를 수행하지 않고

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감사대상 연도 이후 비감사업무 수임에 대하여 논의하는 경우 감사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, 품질관리실 협의 등을 실시하지 않음

⇒ 공인회계사법에서 금지하는 비감사업무는 독립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하므로, 그 외의 비감사업무를 별다른 검토 절차 없이 수행하여 사실상의 독립성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,

회계법인은 수행업무가 감사의 독립성을 위협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검토를 수행하여야 함

(사례5) 독립성 점검 대상회사 관리 미흡

- ◆ 독립성 시스템에 모든 감사·비감사업무 대상회사(종속회사 포함)가 입력되어 있고, 수임예정 계약과의 상충여부도 적시에 관리해야 하나

J회계법인은 감사대상회사의 지배·종속회사 관리시스템을 미구축하였고 K회계법인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관련 내용을 미입력하고 있음

⇒ 회계법인 전체 구성원이 감사 또는 비감사업무 제공이 제한되는 회사를 적시에 누락 없이 파악할 수 있도록,

- 감사대상 회사의 종속회사, 계약 추진 중인 회사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시에 누락없이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함

II 사업보고서 위반

가 사업보고서 제도

- (개요)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(금융감독원)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함(외부감사법§25①)
- (제출 방법) 증권선물위원회(금융감독원)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DART편집기(<https://filer.fss.or.kr>)*를 이용하여 제출
- (위반시 조치)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*하거나,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기재 혹은 기재를 누락한 경우 및 사업보고서를 비치·공시하지 않은 경우
 - * 제출 마감일('25.3월 결산법인은 '25.6.30., 만약 제출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) 18시 경과 후 제출은 익일접수로 처리되어 제출의무 위반에 해당
- 외감규정 시행세칙 [별표4]에 따라 지정제외점수(10~150점) 부과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

< 시행세칙 [별표 4] III. 조치기준(1.사업보고서) >

위반 유형	기본조치 (지정제외점수)
가중시 최대	150점
I. 미제출, 거짓 기재 및 미기재(고의)	100점
II. 기재사항의 오류·누락(4배이상)	60점
III. 지연제출(기한경과후 유예기간이내), 기재사항의 누락	30점
IV. 기재사항의 오류	20점
V. 비치·공시의무 위반	10점
감경시 최소	경고

주) 위 표에서 위반 유형이 'II' 또는 'III'에 해당되고, 최종 감경단계(가중단계 차감 후)가 각각 3단계 또는 2단계 이상인 경우 '조치없음'을 부과할 수 있다.

(사례1) 거짓기재

- ◆ A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서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대여금을 다른 임직원에게 대한 가수금과 임의로 상계하여 자산과 부채를 각각 동액만큼 과소계상하였으며, 동액만큼 특수관계자 채권 및 채무 잔액을 공시하지 않음

⇒ 거짓기재 및 미기재는 지정제외점수 100점이 부과됨을 주의

(사례2) 지연제출

- ◆ A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'2X.6.30.까지 증권선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1일 경과한 '2X.7.1.에 제출

⇒ 제출기한을 준수할 필요

제출기한 경과후 7일 이내에 지연제출 할 경우 지정제외점수 30점이 부과되나,

그 이후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지정제외점수 100점이 부과됨을 주의

(사례3) 기재사항 누락

- ◆ A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품질관리관련 정보 등 다수의 기재 항목을 누락(12~13항목)한 사실이 있음

⇒ 기재사항 누락은 지정제외점수 30점이 부과되나,

기재사항 누락 관련 금액이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 기준 4배 이상인 경우 지정제외점수 60점이 부과됨을 주의

(사례4) 기재사항 오류

- ◆ A회계법인은 사원간 출자지분 양수도 과정에서 지분양수사원이 양도사원에게 지급해야 할 지분 인수대금을 회계법인이 대신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권을 대여금 등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, 내규에 따라 예치한 예수금과 차감(상계)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함으로써, 재무제표상 자산(대여금 등)과 부채(예수금)를 과소계상함
- ◆ B회계법인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을 기재하면서 총보상한도가 XXX억원임에도 XX억원으로 과소기재함
- ◆ C회계법인은 법인 전체의 매출 규모는 적정하게 기재하였으나, 회계감사, 세무대리, 경영자문 및 기타 매출을 잘못 분류하여 사업부문별 매출액을 잘못 기재함
- ◆ D회계법인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 적용 대상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여,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
- ◆ E회계법인은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* 거래 및 채권·채무 잔액 등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음

* 회계법인 임원이 지배하는 기업 및 임원으로 구성된 조인트벤처 등

- ◆ F회계법인은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추정하고 정액법으로 상각하기로 하였으면서도 재무제표에서 영업권 금액을 과소 상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
- ◆ G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소속회계사에 대한 손해배상예치금 환급액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

⇒ 기재사항 오류는 지정제외점수 20점이 부과되나,

기재사항 오류 관련 금액이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 기준 4배 이상인 경우 지정제외점수 60점이 부과됨을 주의